

# 平昌郡議會本會議會議錄

第28回平昌郡議會

第 3 號

平昌郡議會事務課

日 時 : 1994年 12月 29日(木) 14時10分

## 議事日程 (第3次 本會議)

1. 第28回平昌郡議會(定期會)會議錄署名議員選出斗件
2. 1994年度行政事務監查結果報告
3. 平昌郡行政情報公開條例案
4. 平昌郡稅減免條例案
5. 平昌郡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吳運用條例等改正條例案
6. 1994年度第4回平昌郡一般會計吳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 附議斗 案件

1. 報告事項 \_\_\_\_\_ 2 面
2. 第28回平昌郡議會(定期會)會議錄署名議員選出斗件(議長提議)\_\_\_\_\_ 2 面
3. 1994年度行政事務監查結果報告(行政事務監查特別委員會提出)\_\_\_\_\_ 3 面
4. 平昌郡行政情報公開條例案(平昌郡守提出)\_\_\_\_\_ 4 面
5. 平昌郡稅減免條例案(平昌郡守提出)\_\_\_\_\_ 7 面
6. 平昌郡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吳運用條例等改正條例案(平昌郡守提出) 8 面
7. 1994年度第4回平昌郡一般會計吳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平昌郡守提出) 9 面

(14時 09分 開議)

○ 議長 韓榮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8회 정기회도 35일간의 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연일계속된 의정활동에도 한분도 빠짐없이 정열을 다해 정기회운영에 적극동참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와 그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의정활동을 적극지원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94년을 마감하는 오늘회의도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報告事項

(14時09分)

○ 議長 韓榮一 :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事務課長 權赫昇 : 사무과장 권혁승입니다.

( 보고사항 - 끝에 실음 )

○ 議長 韓榮一 :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 第28回平昌郡議會定期會會議錄署名 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14時 10分)

○ 議長 韓榮一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박용태의원과 주태원 의원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지명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1994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提出)

(14時 11分)

○ 議長 韓榮一 :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치욱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致玉 議員 : 이치욱 의원입니다. 1994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및 기간결정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11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승인됨에따라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에 걸쳐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당연 대상기관인 평창군의 본청및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으로 하였고,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전원과 업무를 돕기위하여 전문위원의 직원 4명이 보조를 하였습니다. 감사일정및 장소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명시된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로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내용은 사회단체 각종 보조및 보상금집행내역을 포함한 총94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으며,

감사처리의견중 시정및 처리요구사항은 풀보조금및 보상금의 집행에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후 집행하여야 될 성격의 사업비를 집행한것의 32건에 대하여 시정과 처리요구를 하였고,

건의사항으로는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국.도비 확보문제와 추진위원단의 적극적인 활동 촉구외 4건에 대하여 건의를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상세한 내용과 기타 심사의견중 종합의견, 미흡한 부분, 금후개선방안등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창군에 대한 1994년도 행정  
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 議長 韓榮一 : 이치욱 의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고를 들은바 있는 의제에 대해  
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을 선포합니다.

4. 平昌郡行政情報公開條例案

(平昌郡守提出)

(14時16分)

○ 議長 韓榮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  
항 평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  
니다.

본의제에 대하여 지난 11월 15일 김낙운  
의원의 6인으로부터 평창군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오늘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榮柱 : 내무과장 김영주  
입니다.

평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관이 공무상 작성, 취  
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을 일반 주  
민에게 열람, 복사의 형태로 공개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참여에 의한 책임행정의진작을 통하여 국민생활 관련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에 따른 국민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민주적인 군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정과 관련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해 주민 복지증진과 민주적인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행정정보공개를 청구 할 수 있는 자는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거나 군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정하였으며 공개 또는 비공개 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명확히 규정하여 개인,단체, 법인의 보호와 군정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고자하며, 행정정보청구인이 청구서에 작성한 사용목적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행정정보공개는 청구 받은날로 14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즉시 결정할 수 있을때는 구두로 통보할 수 있으며, 비공개결정시 이의 신청 절차를 청

구인에게 통지토록 하였습니다.

비용부담은 " 보존문서열람및 수수료에 관한 규칙"을 준용 정수 토록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의가 있을시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집행기관은 10일 이내에 행정정보공개심의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정보공개에 있어 자문과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9인이내로 군수가 위촉 도는 임명토록 정하였습니다.

심의위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집행기관은 행정정보공개목록을 작성하여 지정된 장소에 비치하였으며 행정정보공개운용사항을 매년 2회(1월,7월중)에 걸쳐 주민들에게 공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평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韓榮一 : 다음은 김낙운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樂雲 議員 : 김낙운 의원입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군정에 관한 행정정보 공개의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백히 정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공개행정을 통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주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 군정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입니다  
 수정주요골자는 공개대상 기관범위를 확대하고, 이의 신청절차를 보완 신설하였으며,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임기 조직의 구체화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 평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대한수정안
-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議長 韓榮一 : 제안설명을 하여 주신 두분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는 의제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발언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절차를 마쳤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명 기립)

앞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 음 )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김낙운의원의 6인이 발의한 평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평창군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김낙운의원의 6인의 발의로 수정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平昌郡稅減免條例案(平昌郡守提出)

(14時26分)

○ 議長 韓榮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세 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李永德 : 재무과장 이영덕입니다.

평창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며,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그동안 감면목적에 따라 개별조례로 제정 운영해 오던것을 통폐합하여 단일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4년도말로 감면시한이 만료되는 11개 조례의 시한을 '97년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주차장에 대한 종합토지세 면제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 평창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조>

. 평창군세감면조례안

( 부록에 실음 )

.....  
○ 議長 韓榮一 :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는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소리가 없음 )

재무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발언하실분이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평창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

의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平昌郡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 및 運用條例중改正條例案(平昌郡守提出)

(14時26分)

○ 議長 韓榮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

항 평창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姜慶錫 : 사회과장 강경석입니다.

평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의료보호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관련 법규인 본조례의 상위법 규정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에 규정된 기금관리공무원의 관직명칭이 본 조례와 상이하여 상위법에 일치시킵니다.

주요골자로는 의료보호법 제17조제1항의 개정으로 본조례 제17조제1항중 " 1개월 이내, 6개월내의"를 "6월이내의"로 하고 의료보호법 제18조의 개정으로 본조례안의 제7조의2 "결손처분"조항을 신설하며 의료보호법 제11조및제17조의 개정으로 본조례안의 별지서식 제2호의 "독촉장"

중 "의료보호법 제11조의 제1항및 제2항"을"의료보호법 제17조제1항및 제2항"으로 하며, 의료보호법시행규칙제25조제2항의 개정으로 본조례 제7조제1항중"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날부터"를 "대불한 날부터"로하고, 동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대불금의 총액에 따른 분할 상환규정의 금액과 상환횟수를 상위법에 일치시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관리자의 관직에서 "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평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부록에 실음)

○ 議長 韓榮一 :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는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소리가 없음 )

사회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발언하실분이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평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의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4年度第4回平昌郡一般會計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平昌郡守提出)

(14時30分)

○ 議長 韓榮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4년도 제4회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은 지난 제3회추경이후 정부의 예산과목 변경내시에 따른 부득이한

추경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의기일이 촉박하여 금일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高昶植 : 기획실장 고창식입니다.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세입면에서 당초 상수도특별회계 농어촌생활용수 사업비 진부상수도확장으로 통보된 국고보조금이 지방교부세 증액교부금으로 변경통보되어 지방교부세 7억5,000만원, 세출면에서는 자치단체 내부거래 7억5,000만원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575억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568억3,600만원보다 7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523억4,700만원은 기정예산 515억9,700만원보다 7억5,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조

. 1994년도제4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 議長 韓榮一 :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 검토보고 - 끝에 실음)

이어서 기획실장은 9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高昶植 :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議長 韓榮一 : 의원 여러분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참가 하실분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4년도 제4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기회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의회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초대의회 마지막 정기회를

마감하면서 지나온 기간을 돌이켜보면 국내외적으로 온국민을 초조와 불안속에 떨게한 크고 작은 과도기적 사건사고들이 서로 잇달린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히도 우리지역은 대과없이 착실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이해와 타협으로 온정열을 다바친 지난1여년동안의 의정활동이 더욱 새롭게 느껴집니다.

금년에는 여덟차례에 걸친 80일간의 회의를 통하여 주민의 고충사항을 적극 수렴 군정에 반영하는 한편, 군정의 주요안건들을 성숙된 숙의와 토론으로 밀도있게 심의 처리하여 대의기관으로써 군민의 기대와 바램을 보다 많이 충족하기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한 한해였다고 자부하여 봅니다만 그래도 군민의 기대에 못미친점도 또한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회가 능동적으로 풀어야할 문제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과제는

해가 거듭될수록 산적되어가고 있으며, 이는 우리들의 분발을 더한층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어려운 제반여건으로는 이들 바램을 해결하기엔 너무많은 난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때 우리의원들은 이모든 여건을 굳은 의지로 직시하고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는 깊은 성찰과 새로운 각오로 남은 임기동안 못다이룬 과제들을 착실히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것입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동안 의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명기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새해에는 완전지방자치의 초석이 되어 4개지방선거동시 실시가 온군민의 지지속에 완벽히 실시되고 군민모든분들이 금년에 못다이룬 소망들이 모두 성취되시고 가내 건승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94년도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와 폐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0分閉會)

○ 出席議員

議 長	韓 榮 一
副議長	金 鍾 永
議 員	李 致 玉
議 員	李 相 薰
議 員	朴 容 泰
議 員	朱 泰 元
議 員	金 樂 雲
議 員	郭 文 春

○ 出席公務員

郡 守	李 明 基
副 郡 守	韓 琦 洙
農村指導所長	劉 載 國
企 劃 室 長	高 昶 植
內 務 課 長	金 榮 柱

社會振興課長	權 純 喆
財 務 課 長	李 永 德
社 會 課 長	姜 慶 錫
環境保護課長	金 學 根
地域經濟課長	申 大 松
都 市 課 長	金 敏 洙
建 設 課 長	洪 基 杓
民防衛 課 長	金 昌 吉
社會指導課長	全 根 鐸
技術普及課長	李 宇 炯

○ 議會事務課

事 務 課 長	權 赫 昇
議 事 係 長	咸 京 鎬

【 議 席 】

○ 議席表 ( 23 面에 실음 )

平昌郡議會 會議規則 第46條의 規定에 의거 署名 捺印함.

1994年 12 月 日

議 長

韓 崇 

議 員

朴 容 

議 員

朱 泰 

事務課長

權 赫 

【 報 告 事 項 】

○ 議案接受

- 平昌郡守提出
  - 1994年度第4回平昌郡一般會計 및 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 (1994年 12月 24日)

1994年度第4回平昌郡一般會計및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

# 檢 討 報 告 書

## I. 概 要

### 1. 會計別 規模

(單位:천원)

會計別	規 模	1994年度 豫 算 額				비 고
		豫 算 額	既定豫算額	4回 追更	伸張率	
計		57,586,623	56,836,623	750,000	101.3	
一 般 會 計		52,347,328	51,597,328	750,000	101.5	-
特 別 會 計		5,239,295	5,239,295	-	-	
	上 水 道	3,303,099	3,303,099	-	-	
	住 宅 事 業	939,877	939,877	-	-	
	醫 療 保 護 基 金	500,984	500,984	-	-	
	低所得住民生活 安定 基金 管理	77,843	77,843	-	-	
	農工地區造成 및 管 理 事 業	138,315	138,315	-	-	
	새마을所得金庫 運 營 管 理	279,177	279,177	-	-	

## 2. 一般會計

### 가. 歲入規模

(單位:천원)

區 分	1994年度 豫 算 額					備考
	豫 算 額	構 成 比	既定豫算額	4 回 追 更	伸 張 率	
計	52,347,328	100	51,597,328	750,000	101.5	
地 方 稅	6,038,550	12	6,038,550	-	-	
稅 外 收 入	5,275,668	10	5,275,668	-	-	
經常的	2,850,540	6	2,850,540	-	-	
臨時的	2,425,128	5	2,425,128	-	-	
地方交付稅	21,690,561	41	20,940,561	750,000	103.5	
地方讓與金	4,506,207	9	4,506,207	-	-	
補 助 金	14,536,342	28	14,536,342	-	-	
國庫補助金	6,390,717	12	6,390,717	-	-	
道費補助金	8,145,625	16	8,145,625	-	-	
地 方 債	300,000	-	300,000	-	-	

※ 자주재원을 22%

4. 歲出 豫算 內譯

(1) 經濟 性質別

( 單位: 千圓 )

區 分 性 質 別	1995年 度 豫 算 額					備考
	豫 算 額	構 成 比	既 定 豫 算 額	4 回 追 更	伸 張 率	
計	52,347,328	100	51,597,328	750,000	101.5	
人 件 費	9,190,925	18	9,190,925	-	-	
物 件 費	6,281,580	12	6,281,580	-	-	
移 轉 經 費	4,322,215	8	4,322,215	-	-	
資 本 支 出	30,629,217	59	30,629,217	-	-	
融 資 與 出 資	-	-	-	-	-	
保 全 財 源	392,384		392,384	-	-	
內 部 去 來	795,269	1	45,269	750,000	106	
其 他	154,690	-	154,690	-	-	
豫 備 費	581,048	-	581,048	-	-	

### 3. 特別會計

#### 가. 上水道特別會計

○ 歲 入

( 單位: 千 元 )

區 分	1994年度 豫 算 額					備考
	豫 算 額	構 成 比	既定豫算額	4回 追更	伸張率	
合 計	3,303,099	100	3,303,099	-	-	
事 業 收 入	485,526	15	485,526	-	-	
事 業 外 收 入	1,577,573	48	827,573	750,000	-	
補 助 金	990,000	30	1,740,000	△ 750,000	-	
地 方 債	250,000	7	250,000	-	-	

## II 檢討意見

### 1. 一般會計

- 당초 상수도특별회계 농어촌생활용수사업비(진부상수도 확장)로 계상된 국고보조금이 지방교부세(중액교부금)로 재원변경 됨에 따라 세입의 지방교부세 7억5,000만원과 세출의 지역개발비에서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으로 7억5,000만원 계상.

### 2. 特別會計

-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에서 사업외수입(전입금)을 7억5,000만원 계상하고 보조금(국고) 7억5,000만원을 감편성.